

보도일시 (인터넷) 2024. 3. 28.(목) 11:00,
(지면) 2024. 3. 29.(금) 조간

배포 2024. 3. 28.(목) 06:00

제2회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시행

- 해사안전분야 최초의 국가전문자격증 도입에 따른 자격시험 개최

해양수산부(장관 강도형)는 '제2회 선박안전관리사' 필기시험을 3월 30일(토) △부산(한국해양수산연수원 영도본원), △인천(인천해사고등학교), △목포(목포해양대학교)에서 각각 실시한다.

선박안전관리사는 선박의 대형화, 친환경·첨단화에 따라 해사분야 안전관리를 체계적·전문적으로 수행할 전문가 양성을 위해 새롭게 도입된 국가전문자격증으로, 1~3급으로 구분된다.

「해상교통안전법」 개정에 따라, 선박·사업장의 안전관리체제를 수립·시행해야 하는 선박*소유자는 2024년 1월 5일부터 선박·사업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중 안전관리(책임)자를 선임해야 한다.

* 국제항해 여객선, 총톤수 500톤 이상 화물선, 총톤수 100톤 이상 위험물운반선 등

'선박안전관리사'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△선박관계법규, △해사안전관리론, △해사안전경영론, △선박자원관리론 및 △선택과목(항해·기관·산업안전관리 중 택1)으로 구성된 필기시험과 면접시험(1·2급만 해당)에 합격해야 한다. 3급 이상의 항해사·기관사,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은 선택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다.

제2회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의 필기시험에는 총 1,141명*이 접수하였으며, 1~2급 응시자는 면접시험**까지 합격해야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. 한편 작년 시행한 제1회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에서는 1,136명의 응시자 중 355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다.

* △1급 : 150명, △2급 : 229명, △3급 : 762명 / ** 3급은 필기시험만 응시

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은 연 1회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, 자격제도 도입 초기인 올해에는 선사 등 지원을 위해 총 2회* 실시할 예정이다. 시험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가자격시험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연수원 능력평가팀(051-620-5833/5851)으로 문의하면 된다.

* △ 제2회: 원서접수(3.11~13) → 필기(3.30) → 합격발표(4.2) → 면접(4.6) → 최종합격(4.8)

△ 제3회: 원서접수(7.23~25) → 필기(8.10) → 합격발표(8.13) → 면접(8.17) → 최종합격(8.19)

담당 부서	해사안전국	책임자	과 장	최성용 (044-200-5810)
<총괄>	해사안전정책과	담당자	사무관	윤광상 (044-200-5818)
<시험운영>	한국해양수산연수원	책임자	팀 장	박영숙 (051-620-5830)
	능력평가팀	담당자	교 수	강석용 (051-620-5802)

더 아픈 환자께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

□ 추진배경

- 선박의 대형화, 친환경·첨단화에 따라 해사분야 안전관리 전문성 제고를 위해 선박안전관리사* 자격제도 신설(「해상교통안전법」 제4장제3절)
 - * △안전관리체제 수립·시행, △선박 안전관리 점검지도, △해양사고 예방 지도·조언 등 수행
- 안전관리체제를 수립·시행하여야 하는 선박소유자는 '24.1.5.부터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안전관리(책임)자 선임*필요
 - * '24.1.5.기준으로 안전관리(책임)자 업무를 수행 중인 사람은 자격취득을 3년간 유예
 - ※ '24.1.5.기준으로 안전관리(책임)자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자 등은 특례 교육·평가('24~'26, 시행예정)로 자격취득 가능(「해상교통안전법(법률 제19725호)」 부칙 제5조)

□ 시험개요

- (위탁·운영기관) 한국해양수산연수원(문의 : 051-620-5833 / 5851)
- (시험주기) 연 1회 실시 원칙이나 수요 등 고려하여 조정* 가능
 - * 자격제도 도입 초기인 2024년에는 선사 등 지원을 위해 총 2회 실시할 예정
- (자격등급) 1·2·3급*
 - * 3급은 응시자격에 제한없음
- (방법/과목) 필기*·면접(1·2급) / △선박관계법규, △해사안전관리론, △해사 안전경영론, △선박자원관리론, △선택과목*(항해, 기관, 산업안전관리 중 택1)
 - * 1급은 객관식·주관식, 2~3급은 객관식
 - ** 면제대상 : 3급 이상 항해사·기관사 면허,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지도사 소지자
- (합격기준)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△필기 : 과목당 40점 이상,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, △면접 : 60점 이상

□ 시험일정(안)

구분	원서접수 (온라인)	필기시험 (부산·인천·목포)	필기합격발표 (온라인)	면접시험 (부산·인천)	면접합격발표 (온라인)
제2차	3.11 ~ 13	3.30(토)	4.2(화)	4.6(토)	4.8(월)
제3차	7.23 ~ 25	8.10(토)	8.13(화)	8.17(토)	8.19(월)